



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씨제이씨지브이(주)

#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03.27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직무와 권한)

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심의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#### 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3 장 회 의

#### 제6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소집절차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#### 제7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8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9조(심의사항)

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거래
2. 기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#### 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제 4 장 보 칙

#### 제13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